

인쇄 : 강여울 / 동북아1과 (2012-08-17 18:25:45)

전기절약, 대한민국을 뛰게 합니다



외 교통 상 부

수신 평화연대 귀하 (우110-043 서울 종로구 통인동 132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경유)

제목 평화연대 2차 공개질의서 답변

수신 : 참여연대(평화군축센터)

발신 : 외교통상부장관

귀 기관이 외교통상부, 국방부, 국무총리실에 7.30 송부한 '한-일군사협정 추진에 대한 정부의 답변 관련 2차 질의서'(문서번호 평화군축 2012-0702)에 대해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참여연대가 발송한 공개질의서 2번 질의에 대해 정부는 한·일 정보보호협정 관련 한·일 양국간에 "가급적 금년 상반기 중 협정 체결 필요성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6.26 국무회의에서 심의하게 되었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정부가 금년 상반기 중 체결 필요성과 그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 북한의 도발 위협 상존에 따른 한·일 양국 간 정보 공유가 시급한 상황이고, 5월말 한 차례 협정 서명이 연기됨에 따라 협정 체결이 계속 지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한·일 양국 간에 가급적 금년 상반기 중 협정 체결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2. 1차 질의서 3번 질의에 대한 정부의 답변은 "정부는 여·야 정책위의장 및 일부 의원들에게 협정의 개략적인 내용에 대해 보고 드리고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일부 사회단체, 전문가 및 언론에 설명 드리고 의견을 들은 바 있습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보고 및 설명을 하고 의견을 청취한 일시와 보고 및 설명에 참석한 개인 및 단체명을 공개해 주십시오.

□ 보고 및 설명시기는 5월 중순부터 19대 국회 개원이 공전중인 6월 하순까지이며,
○ 구체적인 개인 및 단체명을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 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쇄 : 강여울 / 동북아1과 (2012-08-17 18:25:45)

3. 1차 질의서 4번 질의에 대해 정부의 답변은 “한·일 정보보호협정에 대한 국회와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며, 국민의 뜻을 존중하여 처리할 것입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한·일 정보보호협정에 대한 국회와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구체적 계획은 무엇입니까?

□ 국회와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국회에 설명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추가적 설명노력을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4.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7.11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긴급현안질의 시간에 한·일 정보보호협정은 ‘안전보장에 관한 것이 아니고 정보보호에 관한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김황식 국무총리는 7.19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김재윤 민주통합당 의원의 ‘한·일 정보보호협정은 국가와 국민의 안위와 직결된 문제’라는 지적에 큰 틀에서는 국가 안위에 관련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지만 ‘직결된 문제는 아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공개된 한·일 정보보호협정의 본문에는 ‘군사비밀정보란 대한민국 정부나 일본국 정부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하여 또는 이들 당국의 사용을 위하여 생산되거나 이들 당국이 보유하는 것으로, 각 당사자의 국가안보 이익상 보호가 필요한 방위 관련 모든 정보를 말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는 김황식 국무총리, 김성환 외교장관 등 정부 주장과 불일치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한·일 정보보호협정 체결이 국가안보, 국민의 안위와 관련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합니까?

□ 상기 국무총리, 외교장관의 발언은 한·일 정보보호협정이 정보를 교환하는 방법과 교환된 정보를 보호·관리하는 절차를 규정하는 협정이라는 점을 설명한 것입니다.

○ 귀 기관 질의에서 명시한 ‘군사비밀정보란...국가안보 이익상 보호가 필요한 방위 관련 모든 정보를 말한다’ 협정문안은 동 협정을 통해 보호받는 ‘군사비밀정보’를 정의하는 규정입니다.

□ 일본과의 정보교류 협력은 북한의 도발위협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는 큰 틀에서 결과적으로 국가의 안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인쇄 : 강여울 / 동북아1과 (2012-08-17 18:25:45)

5. 김황식 국무총리는 7.19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김재온 민주통합당 의원의 '한일 군사협정은 폐기해야 한다'는 지적에 협정이 '폐기할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습니다. 만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관련 국회와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추가적인 노력에도 여전히 반대의견이 강하다면 정부는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완전히 폐기할 의사가 있습니까?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협정 서명을 강행할 것입니까?

□ 앞으로 국회와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며, 국민들의 뜻을 존중하여 처리하겠습니다.

6. 1차 질의서 5번 질의에 대해 정부의 답변은 5월 한·일 군사협력 추진에 대한 언론보도 이후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 추진은 보류하였습니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한편 1번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는 '양국 외교국방당국의 실무자간 협의를 개최하여 2012.4.23 합의 문안에 가서명 하였다'고 적시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4월 양국 외교국방당국의 실무자간 협의 당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함께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 합의문안에 가서명 하였습니까?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 추진을 보류하기로 결정한 정확한 시점은 언제이며, 어느 수준까지 협상이 진행되었습니까?

□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은 그 적용 범위를 국제사회에서의 PKO, 인도적 지원 및 재난구호 활동 분야에서의 물품·용역 제공에 한정하여 협의를 진행 중이었으나,
○ 5월 중순, 국회·언론·사회단체 여론수렴 결과, 추진을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 동 협정은 한·일간 실무 합의된 문안이 없는 바, 가서명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7. 1차 질의서 1,5번 질의에 대해 정부는 '한·일 정보보호협정 서명을 연기'하였고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 추진은 보류'하였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협정 서명 절차상 연기와 보류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 한·일 정보보호협정은 6.29 서명하기로 양국이 합의한 바 있으나, 이를 연기하였으며,

□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은 '연기'할 수 있는 구체 추진계획이 없으며, 아직 실무 문안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았으므로 추진을 '보류'한다는 취지로 1차 질의서에 답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인쇄 : 강여울 / 동북아1과 (2012-08-17 18:25:45)

8. 정부가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 추진을 보류하기로 판단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과 관련하여 이후 어떤 조건이 충족되면 협정 체결 추진이 재기될 수 있습니까?

-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은 그 적용 범위를 국제사회에서의 PKO, 인도적 지원 및 재난구호 활동 분야에서의 물품·용역 제공에 한정하여 협의를 진행 중이었으나,
 - 5월 중순, 국회·언론·사회단체 여론수렴 결과, 추진을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 동 협정의 추진은 국민들의 뜻을 존중하여 처리할 것입니다.

9. 참여연대가 자료공개 청구(6/26)한 제27회 국무회의 회의록 공개자료(7/16 공개)에는 해당 한·일 군사협정 관련 의안에 대해 국무회의에서 '이견 없음, 원안 의결'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본과의 군사비밀정보 교류를 결정하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협정이 즉석 안건으로 상정되어 사전 논의할 시간이 없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당시 국무회의 토의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 속기록이 있습니까? 있다면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면, 이러한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정부의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 국무회의 기록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인 행안부에 문의 바랍니다.

10. 참여연대가 자료공개 청구(7.5) 8번 항목에 따라 공개한 5월 11일 외교통상부가 법제처장에게 제출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안'심사 의뢰 첨부문서의 본문 "6.참고사항, 라. 교섭경위"에 따르면 "1989년 우리측 제안"으로 교섭이 시작되었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7.5)한 2번 항목, "1989년 한일 군사보호협정 체결 필요성에 대해 한국 정부가 일본에 제안한 회담 명칭, 회의자료 및 회의록 일체"에 대하여 국방부 정보본부 보안정책과는 "요청하신 '1989년 한일 군사보호협정 체결 필요성에 대해 한국 정부가 일본에 제안한 회담 명칭, 회의자료 및 회의록'은 확인한 결과 자료 부존재로 공개할 내용이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1989년 우리측 제안"자료가 부존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실무적인 차원에서 구두로 협의를 해온 사항으로 이와 관련된 자료가 존재하지 않음을 양자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인쇄 : 강여울 / 동북아1과 (2012-08-17 18:25:45)

외교통상



2동서기관 강여울

동북아1과 2012. 8. 17.
장 최봉규

협조자

시행 동북아1과-5411

(2012. 8. 17.)

접수

우 110-787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8길 60 외교통상부

/ www.mofat.go.kr

전화번호 2100-7342

팩스번호 2100-7944

/ yukang07@mofat.go.kr

/ 대국민 공개